## 「개인형IRP 핵심설명서」

이 설명서는 개인형IRP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개인형IRP 계약서와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	내 용		
	<ul> <li></li></ul>				
	구 분	운용관리	수수료율	자산관리	수수료율
	고 객	1억원미만	0.08%	1억원미만	0.20%
	납입액	1억원이상	0.07%	1억원이상	0.18%
	퇴직금 -	1억원미만	0.25%	1억원미만	0.20%
	470	1억원이상	0.20%	1억원이상	0.18%
수수료 부 과	** 기타 수수료 *** 수수료 계산식 ※ 금융회사별	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 : 대상기간 적립금평가액 : <b>수수료 비교는 '통합연</b>	일할 수도 있고, 퇴직후 <b>퇴직금</b>    수수료율은 운용∙자산관리 <sup>(</sup> 평균잔액 x 수수료율 x 경과일:   <b>금포털'</b> (https://100lifeplan.fss.c	약관(계약서)에서 확인 가능함 수÷365 yr.kr)에서 <b>확인 가능</b> 함	함
	◇ 인터넷뱅킹	또는 스마트뱅킹 신규	고객은 (기존 비대면 기입	고객 포함) <del>운용</del> ·자산	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		서 가입한 고객이 영 <b>산관리수수료가 면</b> 져	인터넷뱅킹 또는 스미 세됩니다.	-트뱅킹 신규 계좌로	. 계약이전 한 경우
			<i>드(ETF 포함</i> ) 로 운용할 ? 품의 <i>투자설명서(또는 ?</i>		
중도해지 세 제			<b>금액</b> 은 연말 세액공제(1 <b>많은 세금<sup>*</sup>을 납부</b> 할 수 9		만, 세액공제를 받은 후
**   * *	* 중도해	지시, <b>세액공제받은</b>	원금과 운용수익에	대해 <b>기타소득세</b> <1	16.5%> 과세
연금수령 조 건			부터 5년 경과시 연금 간도내에서 수령해야 !		연간 수령액은 <b>소득</b> -세율을 <b>적용</b> 받을 수
	* 단, <b>퇴직</b>	금이 <b>입금</b> 된 <b>개인형IR</b>	P계좌는 55세이상 조건	<b>!만 충족하면 연금수</b> 령	<b>う이 가능</b>
연 간 납입한도 설 정	금융회사의 ]	RP 및 연금저축계좌를		계좌당 납입한도를	)만원 <sup>*</sup> 까지 설정(모든 는 <b>너무 높게 설정할</b> 바랍니다.
2 0	* 연말 세액	공제를 받는 기준금액	은 <b>900만원</b> 인 반면, 고객	이 납입할 수 있는 금역	백은 최대 1,800만원임
	◇ 고객이 적	립금을 <b>현금성 자산</b>	· <i>(고유계정대)</i> 으로 <b>운용</b>	할 경우 수익률이 저	하 될 수 있습니다.
적립금			전을 위해, 원리금보건  이율이 적용됩니다.	상상품을 만기전에 마	<b> 도</b> 할 경우에는 만기
운 용	경우에는				<b>간내</b> (예: 2년) <b>에 환매할</b> 빚 환매수수료율은 해
구속성	기업대표기		개인대출 거래 중(예정		거래 <b>중(예정)인</b> 중소 실행 전·후 1개월 동안
	◇ 개인형IRP	가입 후 1개월 이	내 대출 거래 예정인	고객은 대출이 제형	한될 수 있습니다.

# 「개인형IRP 핵심설명서 세부내용」

내 용

## 1-1 개인형IRP 개요

구 분

<u>₩</u> 제도개요	개인형IRP (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란? 가입자의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본인 명의의 신탁계좌에 적립하고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 (정기예금, 펀드 등)에 자유롭게 운영하여 향후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퇴직연금제도 (개인부담금은 세액공제 혜택, 퇴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율과세)		
	<ul> <li>➤ 가입대상         <ul> <li>퇴직연금제도(DB/DC/기업형IRP/중소기업퇴직</li> <li>근로자, 자영업자, 직역연금가입자 등</li> <li>퇴직금 수령(예정)자</li> </ul> </li> <li>➤ 가입대상 증빙서류</li> </ul>	국연금기금제도) 가입자	
	가입대상	증빙서류 (택 1)	
	퇴직금 일시금 수령 예정자	생략 가능	
	당행 퇴직연금 가입자	생략 가능	
 가입대상 및 증빙서류	타금융기관 퇴직연금 가입자	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근로계약서	
	자영업자	사업자등록증, 소득금액증명원, 고용보험가입확인서, 산재보험가입확인서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※ 수당직 사업소득자는 재직증명서, 위촉증명서도 가능	
	퇴직금제도근로자 퇴직연금제도(DB/DC/기업형IRP/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) 미가입 근로자 1년 미만 / 단시간근로자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근로계약서 ※ 근로자면 모두 가능	
	직역연금가입자 (공무원, 사립학교교직원, 별정우체국직원, 군인)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재직증명서	
가입방법	> 영업점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		
해지방법	> 영업점 창구, 인터넷뱅킹, 스마트뱅킹		

## 개인부담금 납입하도

#### > 개인부담금 납입한도

- 연간 1,800만원 (DC/기업형IRP/개인형IRP 등 퇴직연금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 합산) + ISA 만기계좌 금액
- 1주택 고령가구(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)에 한하여, 주택매매차액 범위 內 최대 1억원 추가 납입 가능
  - 1주택 소유자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고, 더 작은 주택을 매수(매수하지 않을 경우 포함) 시 매매차액 범위 내 입금 가능(입금/입금 불가 사유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참고)
- 세금우대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.800만원으로 한도를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세금우대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
#### ➤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한도 (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)

: 연 최대 900만원\* + {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%(300만원 한도)}

> 개인부담금 세액공제 효과 예시 (세액공제 전 결정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최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)



	구 분	<b>세액공제율</b> (지방소득세 포함)	최대 세액공제액
개인부담금 <b>900만원</b>	종합소득 <b>4,500만원</b> 이하, 총급여(근로소득) <b>5,500만원</b> 이하	16.5%	1,485,000원
900년년 입금시	종합소득 <b>4,500만원 초과</b> , 총급여(근로소득) <b>5,500만원</b> 초과	13.2%	1,188,000원

#### ▶ 납부 시기 및 방법

- \* 매년 계약응당일(최초입금일) 또는 지급일에 적립금에서 자동 차감
- 단,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개설한 개인형IRP 계좌에서 우리은행 인터넷/WON뱅킹에서 개설한 개인형IRP로 우리은행 내 계약이전 할 경우 영업점개설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인터넷/WON뱅킹 개설계좌에서 차감

#### > 수수료 산정 방법

- 수수료율 구간은 개인부담금과 퇴직금을 합산하여 적용
- 계산식 : 최초 입금일(직전 응당일)~금번 계약응당일 전일의 적립금평가액 평균잔액×수수료율×경과일수÷365

#### 수수료율

(단위: 연, %)

구 분		운용관리	자산관리	합 계
개인부담금	1억원 미만	0.08	0.20	0.28
グランド	1억원 이상	0.07	0.18	0.25
퇴직금	1억원 미만	0.25	0.20	0.45
되색금	1억원 이상	0.20	0.18	0.38

#### ▶ 디폴트옵션 상품 운용손익을 고려한 수수료 부과기준(운용관리수수료 한(限)함)

•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(안정투자형/중립투자형/적극투자형)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기존 운용관리수수료를 기본수수료, 손익수수료로 구분하여 운용손익수수료로 부과

**700** 수수료

운용손익수수료 구성	① 기본수수료(적립금 등 운용손익과 관계없이 산정하는 수수료) → 기존 수수료율 X 85% ② 손익수수료(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손익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) → 기존 수수료율 X 15%
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	・기본수수료(기존 수수료율의 85%) + 손익수수료(기존수수료율의 15%)
높을 경우	= <u>현재 수수료의 100%</u> (현행동일)
운용손익이 기준지표와	•기본수수료(기존 수수료율의 85%) - 손익수수료(기존수수료율의 15%)
같거나 낮을 경우	= <b>현재 수수료의 70%</b> (30%할인)
기준지표	•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/중립투자형/적극투자형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 상
71世71年	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

#### > 운용·자산관리 수수료 면제

인터넷/WON뱅킹(스마트뱅킹)	•전체기간 면제. 단, 최초 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타(他) 금융기관 이전
가입고객	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대면 수수료율 적용
퇴직금 입금 고객	•퇴직금 최초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면제 단, 개인부담금 해당 사항 없음

#### > 수수료 할인

장기계약할인	• 2차년도 : 10%, • 3차년도 : 12%, • 4차~6차년도 : 15%, • 7차 ~ 9차년도 : 18%, • 10차년도 이후 : 20% (타(他) 퇴직연금사업자의 최초 개인형IRP 계약일을 증빙하여 신청하는 경우 경과년수에 따른 장기계약 할인 가능. 개인형IRP 간 계약이전 한(限)함)
사회초년생 할인	• 34세 이하 최초 입금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20% 할인
연금수령 할인	•1회 이상 연금수령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30% 할인
누적수익 '0' 이하인 고객	•「누적수익」= (적립금자산/신탁재산평가액 + 인출액 - 부담금납입액) -
운용•자산관리수수료 감면	차감예정수수료

2 운용방법				
구 분	내 용			
운용자산	<ul> <li>▶ 예금, 펀드(ETF 포함), 현금성자산(고유계정대) 등</li> <li>- 주식형/주식혼합형/하이일드 펀드(ETF 포함)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총 적립금의 70%까지만 투자 가능하고, 채권형/채권혼합형(주식 50% 미만, 투기등급채권 30% 이하) 펀드(ETF 포함)는 100%까지 투자 가능함</li> <li>- 정기예금 만기 재예치 불가.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 처리됨. 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포트폴리오 내 원리금보장상품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재예치 됨</li> <li>- 매수 시점마다 해당 금융기관에 고시된 계약 기간별 이율 적용되며, 각 상품별 적용 이율이 상이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상품의 상품설명서 참조</li> </ul>			
	<ul> <li>▶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란?</li> <li>- 사전지정운용제도는 보유상품의 만기 도래 후 6주 동안 별도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, 사전에 가입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운용되는 제도</li> <li>▶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 상품) 적용 순서</li> <li>- 만기 4주 후 통지하고, 통지 후 2주 내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</li> </ul>			

### ▶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유의사항

- IRP 가입자는 하나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필수로 선정해야 하며, 기 선정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

운용됨. 단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는 상품 만기 후 현금성자산(고유계정대)으로 운용됨

-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립금은 예외적으로 100%까지 운용할 수 있음
- 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되어, 포트폴리오 내 개별 상품 매수/매도 불가
- 펀드와 정기예금이 혼재되어있는 안정투자형/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는 만기가 없으며, 편입된 정기예금의 만기 시에는 예외적으로 자동 재예치 가능. 단, 정기예금으로만 구성된 안정형 포트폴리오는 재예치 불가
-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용될 경우, 가입자가 운용하고 있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도가 변경될 수 있음
- 가입자가 직접 현금성자산으로 운용지시 한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이 적용되지 않음
- 개인형IRP 신규가입자는 계좌 신규 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**필수**로 선정하여야 함

#### ▶ 사전지정운용방법(디폴트옵션 상품)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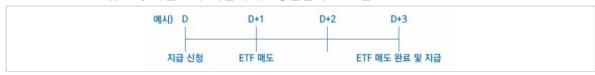
사전지정
<del>운용</del> 제도

위험등급	포트폴리오명	구성상품	투자비중
안정형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형 포트폴리오	신한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50%
(초저위험)	구디근행 나물드답신 인성영 포트놀디오	국민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50%
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	하나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60%
	포트폴리오 1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O	20%
	포트필니오	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제1호(혼합-재간접형)O	20%
안정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	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60%
투자형		한화LifeplusTDF2025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O	20%
(저위험)	포트폴리오 2	신한마음편한TDF203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(C-O)	20%
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안정투자형 포트폴리오 3	교보생명 이율보증형 보험 3년	60%
		KB다이나믹TDF2030증권자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)O-퇴직	20%
		삼성ETF를담은TDF2035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O	20%
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1	기업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30%
중립		한화LifeplusTDF2040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O	30%
투자형		키움키워드림TDF2030증권투자신탁제1호(혼합-재간접형)O	40%
(중위험)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중립투자형 포트폴리오 2	농협은행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3년	30%
(8 H B)		KB온국민TDF203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O-퇴직	30%
	포트글니エ 2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O	40%
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	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O	40%
적극 투자형	포트폴리오 1	한국투자TDF알아서2045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O	30%
		한화LifeplusTDF2040증권자투자신탁(혼합-재간접형)O	30%
	이기이체 디프트이셔 저그트기침	키움키워드림TDF2045증권투자신탁제1호(혼합-재간접형)O	40%
(고위험)	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	KB온국민TDF204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-재간접형)O-퇴직	30%
	포트폴리오 2	삼성한국형TDF2025증권투자신탁H(주식혼합-재간접형)O	30%

#### > 운용자산별 소요기간

구분	정기예금	국내채권형 펀드	국내채권혼합형 펀드	국내주식형 펀드	기타상품
매수	D+1	D+2	D+2~3	D+2	D+2~3
매도	D+1	D+3	D+4~5	D+4	D+2~14

- 매수·매도 신청일(입금예정상품을 등록한 경우 실제 입금일)이 D일이며, 소요기간은 은행 영업일 기준
- 매수·매도 운용지시는 신청일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, 소요기간은 판매회사와 운용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람
- ▶ 원리금보장상품 지급 신청 시 매도 소요기간 + 1영업일이 소요됨
- ▶ 펀드 투자설명서 내 기재된 매수/매도 [17시(15시30분)이전 기준] 기준가 적용 일자 및 지급 일자보다 + 1영업일 소요됨
- ▶ ETF 체결 매수(영업일 15시 이전 : 당일, 15시 후 : 익영업일) - 매도(영업일 15시 이전 : 당일, 15시 후 : 익영업일)
  - ETF 매수/매도 자금결제는 체결일+2영업일이 소요됨
  - ETF 보유고객 지급\* 시 지급까지 3영업일이 소요됨



- ▶ 사전지정운용방법- 포트폴리오 내 상품별 매수/매도 소요기간이 상이 「사전지정운용방법 포트폴리오 상품설명서」참고
- 모든 상품이 매도 완료되어야 지급\*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각 상품별 (간이)투자설명서 참고
  - \* 지급: 해지, 계약이전, 중도인출 등
  - ※ 계약이전(현금이전)의 경우 보유 중인 모든 상품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, 계약이전(실물이전)의 경우 실물이전 불가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매도가 발생할 수 있고 매도 소요기간은 각 상품별로 다름

## 3 연금수령/해지/중도인출

(4)

매수·매도

소요기간

구 분	내 용
연금수령	<ul> <li>&gt; 연금수령 요건 : 55세 이후부터 연금신청 가능</li> <li>- 단, 개인부담금만 있는 경우 55세 이후 &amp; 최초 입금일부터 5년 경과 후 연금신청 가능</li> <li>&gt; 연금수령방법         [수령방식] : 기간지정/금액지정/자유인출 중 택1         ※ 일부인출 : 기간지정 또는 금액지정방식으로 연금 수령 중인 경우, 연간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추가 인출 가능(연 1회 한園함) [수령주기] : 1개월/3개월/6개월/12개월 중 택1         [수령구액] : 금액지정/자유인출/일부인출의 경우 최소 10만원 이상(만원 단위). 단, 최소유지금액 300만원 [수령기간] : 기간지정방식은 ①10년 이상~40년 이내 또는 ②100세 만기 중 택1         • 2013.3.1 전 개설한 계좌 또는 2013.3.1. 전 DB · DC · 기업형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5년 이상 연금수령 가능         •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시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적용</li></ul>
해 지 (일시금수령)	<ul> <li>자유로운 계좌 해지 가능 (단, 일부해지는 불가)</li> <li>해지를 신청한 당일은 해지 자금 수령이 불가하며, 운용 중인 모든 상품의 매도가 완료된 후 일괄 지급 가능하며, 운용 중인 상품에 따라 지급/해지 소요일수가 다름</li> </ul>
중도인출	<ul> <li>&gt; 중도인출 사유 : 무주택자의 주택구입, 무주택자의 전세임차보증금,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(단, 2020.4.30. 이후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비 및 의료비용 요건 추가), 개인회생, 파산선고, 사회재난 등</li> <li>▶ 인출가능 금액 : 예정수수료 + 10만원을 제외한 전액</li> </ul>

구 분 내용

#### > 적립금 구성 체계

	자기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	운용수익
퇴직금	자기부담금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	(퇴직금, 자기부담금에서
	(해지 전 과세제외 요청 또는 해지 후 환급요청 가능)	발생한 운용수익)

#### > 전용세제

구 분	<b>연금수령</b> (연금수령 한도 이내)	일시금 수령(해지)	부득이한 경우
퇴직금	퇴직소득세×70%	퇴직소득세	퇴직소득세×70%
자기부담금+운용수익	연금소득세 (3.3~5.5%)	기타소득세 (16.5%)	연금소득세 (3.3~5.5%)



#### 적용세제

- \*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(퇴직소득세×10%) 별도
- 연금소득세율: 80세 이상 3.3%, 70세 이상 4.4%, 그 외 5.5%(지방소득세 포함)
- 개인형IRP 인출순서\*: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기부담금 원금→퇴직금→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 원금→운용수익 \*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(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)에 따름
- 부득이한 경우 : 가입자 사망·해외이주·파산·개인회생/가입자 또는 부양가족 질병·부상(3개월이상 요양)/천재지변/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
  - 요양입원지출금액 : 의료비+간병비+(본인 휴직·휴업 월수×150만원)+200만원
- 해외이주 : 2017.2.3. 이후 입금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입금 후 3년 이후 이주에 한함

#### ▶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 혜택 확대

- 수령기간 10년 이하 시 퇴직소득세의 70%, 10년 초과 시 퇴직소득세의 60% 적용
- \*2020.1.1. 이후 연금수령 분부터 적용
- ▶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타소득세(16.5%) 부과로 해지 시 수령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

### 5 유의사항

- ▷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.
- ▷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납입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(16.5%)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🛂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(개인형퇴직연금계좌 포함)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. (단,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계좌 간의 이체는 「① 55세 이상 ②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」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능)
- ▶ 연금수령 신청시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세무서 또는 국세청(홈택스)에서 발급한 「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」를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≥ 연금수령연차가 5년차 이내이면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신청시,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액 발생으로 퇴직소득세의 100% 또는 기타소득세(16.5%)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- ≥ 예금성 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 적용으로 수익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.
- ▷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- ▶ 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라 개인형IRP 적립금으로 운용하는 **저축은행 정기예금**의 상품 투자한도는 예금자보호 한도인 5,000만원(저축은행별)과 동일하며, 당행은 만기시 발생할 이자금액을 감안하여 저축은행별 원금기준 4,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 단, 타 금융기관과 복수로 퇴직연금 거래 시 가입자 본인이 저축은행별 투자한도가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합니다.
- ▶ 투자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▶ 투자성 상품(집합투자증권, ETF 등)의 과거의 운용실적은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,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▷ 당사는 투자성 상품(집합투자증권, ETF 등)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1항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, 투자자는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, 보수·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(간이)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▷ IRP 자동이체 등록 후 미납 시 누적된 미납 금액 총금액이 출금되는 것이 아니라, 직전 1회차만 출금되며 직전 1회 미납 금액에 대한 이체시도는 다음 이체일 전 영업일까지만 시도합니다.
- ≥ IRP 자동이체 등록 한도는 우리은행에서 등록 가능한 연간 세금우대 납입한도까지만 가능합니다.

※ 2025.04.01.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향후 세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우리은행 인터넷뱅킹/스마트뱅킹(WON뱅킹)을 통해서 상품운용, 자산현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※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영업점, 우리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(1599-1000, 평일 09:00~18:00), 우리은행 홈페이지(www.wooribank.com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